



가전제품 포장표시와 가이드라인

Packaging of Consumer Electronics Products and Their Guideline

金子 武弘 / (재)가전제품협회 용기포장리사이클법전문위원회제2영업부

1. 가전제품의 포장과 표시

「가전제품의 포장」은 헤드폰이나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와 같은 소형 경량제품의 포장에서부터 TV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대형 중량상품의 포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와 구조의 포장이 있다. 또한 블리스터팩이나 필름포장으로 대표되는 상업포장이나 골판지와 완충재에 의한 수송포장, 정전기 방지 포장 등 포장의 형태나 요구되는 기능도 폭넓다. 또한 이러한 제품 포장은 판매점에서부터 직접 소비자의 손에 닿는 것, 또는 판매점에 의한 배송이나 설치에 의해 소비자의 손에 닿지 않는 포장으로 나뉜다. 이처럼 가전제품의 포장은 제품의 크기나 강도에 의한 것 외에 판매 형태나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다종 다양한 포장이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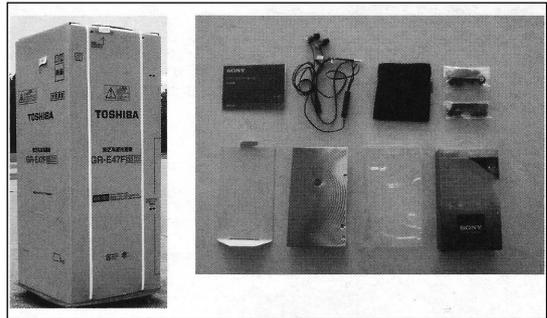
가전제품의 포장에는 또한 수많은 표시가 시행되고 있다. 기종명이나 그것이 어떠한 상품인지, 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 상품인지를 나타내는 소비자나 판매점을 대상으로 해 판매 관리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표시, 상품에 이용되는 특

허기술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한 표시나 물류 상의 화물 취급에 관한 지시 마크, 그리고 3R법에 근거한 용기포장식별표시나 전기용품안전법, 품질표시법 등을 바탕으로 한 표시 등 각종 법률을 근거한 표시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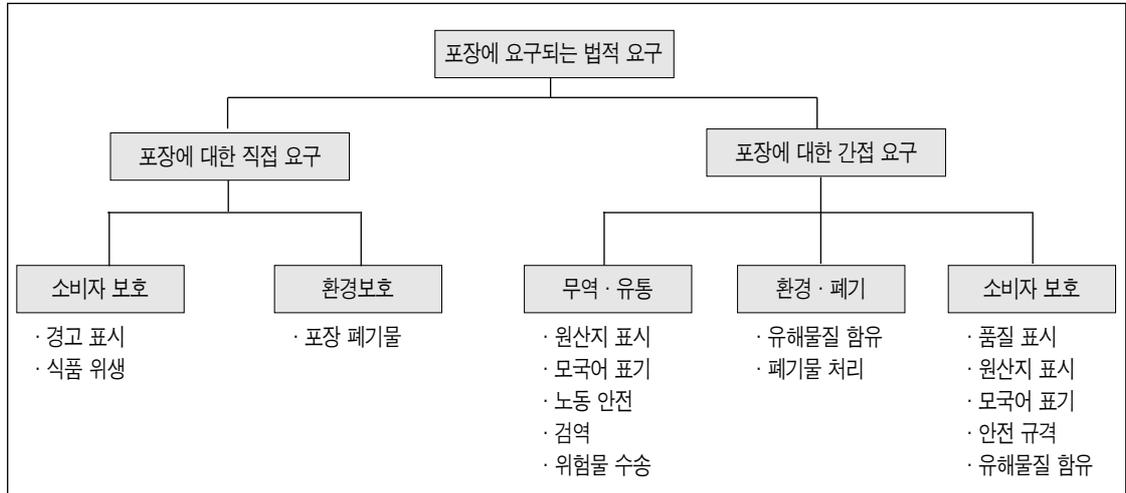
이들 표시 중에서 특히 중요도가 높은 「법률에 근거한 표시」에 관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포장 위에 표시되는 법률에 근거한 표시」는 포장 자체를 대상으로 한 표시는 약간 있고, 대부분이 제품 등에 관한 법적 정보를, 포장을 「정보 전달매체」라는 형태로 이용해 표시하고 있다.

[사진 1] 가전 제품의 포장



[그림 1] 포장에 대한 법적 요구와 분류



※ 주 : (그림 1)은 국제적인 법적요구의 시점에서 정리한 것으로 일부 일본의 법제화는 다른것이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가전제품의 포장에는 대부분의 법정 표시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용기포장리사이클의 관점에서 정리하며, 2013년 3월에 수정된 「용기포장식별표시 등에 관한 가전업계의 가이드라인」(이하 식별표시 가이드라인) 제3판에 관해 소개한다.

2. 가이드라인 작성의 배경

식별표시 가이드라인은 2000년 7월 관련 사업자, 소비자, 자치단체, 관련 성령 등으로 이루어진 「용기포장식별표시 등 검토위원회」가 발행한 「종이제 및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의 식별표시 등에 관하여(보고)」의 내용에 따라,

- a. 일괄해서 표시하는 경우에 표시부분을 둘러싼 테두리나 부위의 명칭, 표시를 부착하는 장소, 병기하는 식별마크의 상대적 크기 등 기타 표기방법.
- b. 다중용기포장 등에 식별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용기포장(유리병, 음료용 이외의 금속캔, 골판지, 음료용 종이제 용기 등의 용기포장)이 포함된 경우의 정보 제공의 방법.

c. 종이제 및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의 표시를 일괄해서 표시할 수 있는 용기포장이 식별표시의 의무화되지 않은 용기포장(유리병, 음료용 이외의 금속캔, 골판지, 음료용 종이제 용기 등)에 한정되는 경우의 대응.

d. 「같은 타이밍으로 폐기되는 경우」의 상세한 판단 등에 관하여 「각 사업자 또는 업계별 대응에 준하는 사항」이 되고, 이것을 받아 각 업계에서는 식별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발행하고 있다.

이 식별표시 가이드라인은 가전제품 포장의 대부분이 다중용기포장이며, 무지의 용기포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토가 개시되었다. 검토와 작성은 (일재)가전제품협회 용기포장리



사이클법전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단체에게 협력을 호소하고, (일사)일본전기공업협회 포장위원회가 그 위탁을 받아 작성했다.

2000년에 제1판이 발행된 식별표시가이드라인은 2005년에 용기포장의 정의나 법정 표시사항과 임의사항의 명확화, 또한 식별마크의 권장 최소사이즈를 기재하는 등 포장 전문가 이외의 사람도 사용하기 쉽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오늘날 상품 형태의 변화도 파악해 사례집을 수정하고, 일괄표시에 이용하는 권장용어를 수정하는 등 보다 사용하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목표로 해 2013년 3월에 제3판이 발행되었다.

3. 식별표시가이드라인

3-1. 특징

가전제품의 포장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다종의 포장 형태가 있다. 이 때문에 식별표시가이드라인도 가전제품에서 주로 취급되는 6가지 종류의 포장 형태에 관해 일괄표시의 위치나 표시방법을 기재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표시를 알 수 있도록 실제 제품 포장의 표시를 사례집으로써 부속하고 있다. 다음에 본문에서부터 가져온 내용을 소개한다.

3-2. 타이밍으로 폐기되는 경우

각 사업자 또는 업계별 대응에 준하는 사항이 된 「같은 타이밍으로 폐기되는 경우」의 상세에 관해 실제 포장 형태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3. 표시 운용

표시 운용에서는 법정 표시로서의 식별표시

방법을 기본사항으로써 정하고, 그 다음에 포장 형태별 일괄표시 위치 등을 정하며, 각 사업자 또는 업계별 대응에 준한 「다중용기포장 등에 식

다중용기포장의 폐기에 관하여

〈폐기의 타이밍〉

가전제품이 이용되는 용기포장을 폐기의 타이밍으로 본 경우, 건전지, 전구류 등으로 대표되는 동일 제품을 복수 취급한 집합포장(이하 멀티팩으로 표시)과 TV, 냉장고와 같이 1대씩 포장되는 개별포장이 있다. 이들 폐기의 타이밍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개별포장에 사용되는 용기포장은 「폐기의 타이밍이 다른 용기포장」에 기재한 것을 빼고, 모두 동일한 타이밍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b. 집합포장에서 다음의 제품에 유사한 것은 동일 타이밍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용기포장이 동일 타이밍으로 폐기된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예 :
· 건전지나 전구류의 멀티팩 등

〈폐기의 타이밍이 다른 용기포장〉

폐기의 타이밍이 다른 용기포장은 개별표시의 대상으로 한다.

폐기의 타이밍이 다른 용기포장의 예 :

· 보증서 보존봉투, 전기면도기에 부속하는 윤활유 용기, 프린터의 카트리지 등

〈법정 표시〉 식별표시의 방법

〈기본사항〉

a. 식별표시의 방법은 개별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일괄표시는 개별표시가 어려운 용기포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한다.

c. 일괄표시는 표시 공간에 따라 「부분 일괄표시」 또는 「전체 일괄표시」를 선택해 좋은 것으로 한다. 단 제조사는 소비자가 알기 쉬운 표시가 되도록 노력한다.

d. 복합재료로 만든 용기포장(종이와 플라스틱의 접합 등)에 표시하는 마크는 질량비율이 큰 재료의 마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포장 형태별 일괄표시 단위

일괄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포장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골판지용기포장〉

- 외부상자 위에 폐기 시 소비자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표시한다.
- 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환경성능표시, PL표시, 제품 설명, 리사이클마크 등이 인쇄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면에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충】

골판지는 식별표시하는 용기포장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가전 제품에서 소비자의 눈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외부상자인 골판지상지이기 때문에 골판지상자 위에 일괄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름용기포장〉

a) 필름에 모든 인쇄가 있는 경우

- 외장필름 위에 폐기 시 소비자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표시한다.
-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환경성능표시, PL표시, 제품 설명, 리사이클마크 등이 인쇄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면에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b) 필름이 모두 무지인 경우

- 필름 안쪽에 표시 가능한 대지나 상자 등이 있는 경우 : 대지나 상자에 일괄표시한다.
- 대지 등이 없고, 물리적 제약이 없는 라벨이 부착되고 있는 경우 : 라벨에 일괄표시한다.
- 무지의 필름만 있는 경우 :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

c) 집합포장으로 외장필름(집합포장)에 인쇄가 있고, 내장필름(개장)이 무지인 경우

- 외장필름의 소비자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표시한다.
-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환경성능표시, PL표시, 제품 설명, 리사이클마크 등이 인쇄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면에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내장필름(무지)에 대한 표시는 생략이 가능하다.

d) 집합포장으로 외장필름(집합포장)이 무지, 내장필름(개장)에 인쇄가 있는 경우

- 내장필름 위에 폐기 시에 소비자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표시한다.
-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환경성능표시, PL표시, 제품 설명, 리사이클마크 등이 인쇄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면에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외장필름(무지)에 대한 표시는 생략이 가능하다.

일괄표시의 표시권장용어 :

표시권장용어 ¹⁾	부품 명칭
상자	상자, 슬립, 트레이, 윗판, 개장상자, 중간상자
파우치	파우치, 보호파우치
시트	시트, 보호시트
필름	필름, 보호필름, 슈링크필름
완충재	완충재
팩	블리스터, 크럼 셀
탭	탭
칸막이	칸막이, 보호 패킷, 스페이서
고정재	링, 끈, 홀더
대지	대지
조인트 ²⁾	조인트, 접합(결합)구
밴드 ³⁾	PP밴드 등
손잡이	손잡이, 핸들

※ 1 「표시권장용어」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성령 「특정 용기포장 표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성령」에서 「역할명」으로써의 「표시권장용어」이다.

※ 2 조인트 및 밴드에 관해서는 용기포장에 해당하는 요건인 「다른 부분과 일체가 되어 상품을 보호 또는 고정한다」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대상, 단순히 화물 취급이나 제품을 묶기 위해 이용되는 것은 대상 외이다.

일괄표시는 표시권장용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부품 명칭이 복수 존재하고, 복수의 재료가 이용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을 표기하는 등 보충어(부속품 상자 등)를 이용해 소비자가 알기 쉬운 표현을 하도록 한다.

별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용기포장이 포함되는 경우의 정보 제공의 방법 및 「종이제 및 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의 표시를 일괄해서 표시할 수 있는 용기포장이 식별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용기포장에 한정되는 경우의 대응」에 관해 정해지고 있다. 포장 형태별 일괄표시는 골판지용기포장과 포징용기포장의 예를 소개했는데, 골판지는 본래 식별표시의 대상으로써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소비자 시점에서 일괄표시할 필



요가 있어서 보충했다.

또한 필름용기포장은 무지의 필름과 인쇄된 필름과의 조합에 따라 운용을 정하고, 식별표시가 이드라인의 이용자에 따라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3-4. 일괄표시할 때의 용어 정의

일괄표시를 할 때의 부위의 명칭에 관해서는 특히 소비자가 봤을 때에 「같은 가전제품이라면 회사가 달라도 부위 명칭은 같아야 한다」는 통일성에 배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인트 및 밴드는 그 용도에 따라 용기포장의 일부가 될 수도, 대상 외가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법률을 바탕으로 해 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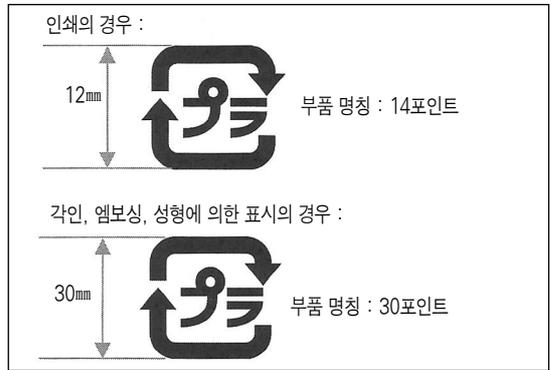
3-5. 표시의 색 및 크기에 관하여

표시의 크기는 가전제품의 포장 매체에 대한 인

쇄 수단이 플렉소 인쇄에서부터 오프셋, 그라비아로 폭이 넓으며, 또한 각인, 엠보싱, 성형도 그 방법에 의해 표시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표시 품질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라면 6mm이상, 8mm 이상의 표시도 가능하다.

또한 법정 상의 크기보다도 큰 사이즈를 권장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가전업체가 권장하는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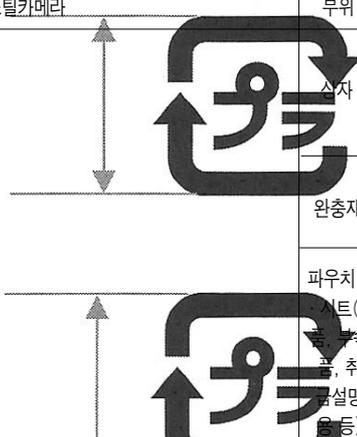


[그림 3] 가전제품 포장에 있어서 표시 사례 ①

포장형태 골판지용기포장 제품사례 냉장고	사양				원칙적 대응	일괄표시의 예
	부위	재질	분별	표시		
	시트	골판지	-	-	표시 불필요	
	슬립	골판지	-	○	표시	
	바닥 트레이	골판지	-	-	표시 불필요	
	완충재	PS (성형품)	플라스틱	○	표시	
	완충재	PS(히터 커트폼)	플라스틱	○	생략 가능 (일괄표시)	
	고정재	PS(히터 커트폼)	플라스틱	○	생략 가능 (일괄표시)	
	파우치(본체, 취급 설명, 부속 설명)	PE	플라스틱	-	생략 가능 (일괄표시)	
	밴드	PP	플라스틱	-	생략 가능 (일괄표시)	
테이프	용기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 불필요					

※ 사양의 「표시」는 인쇄나 성형공정의 유무를 나타냄

[그림 4] 가전제품 포장에 있어서 표시 사례 ②

포장형태 골판지용기포장 제품사례 디지털스틸카메라	사양				원칙적	일괄표시의 예
	부위	재질	분별	표시	대응	
	상자	골판지	-	○		: 파우치 : 완충재
	완충재	펄프물도	종이	-	생략 가능 (일괄표시)	골판지
	파우치· 시트(상 표 부착 용, 취 침설 명 등)	PP	플라 스틱	-	생략 가능 (일괄표시)	

※ 사양의 「표시」는 인쇄나 성형공정의 유무를 나타냄

3-6. 법률 이외의 보충 자주표시 사항

식별표시 가이드라인의 특징으로써 법률상의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각 사의 재량에 의해 표시를 하는 항목으로써 재료 표시, 골판지의 리사이클촉진심벌의 표시 등에 관해서도 권장항목으로써 운용방법을 기재하고 있다.

3-7. 표시사례집

가전제품의 포장이 다양한 것은 앞서 서술했다. 이 때문에 표시가이드라인에서는 문장에 의한 설명만이 아닌 이용자가 구체적인 이미지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제품, 4가지 포장형태 28기종의 각사 개별표시와 일괄표시의 예를 「표시 사례집」으로 부속하고 있다.

4. 마치며

식별표시 가이드라인은 여러 개정을 거쳐 제3

판이 되었다. 이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가이드라인이자 소비자가 알기 쉬운 표시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일관되고 있다.

용기포장리사이클법도 시행한지 올해로 14년이 지났고, 동 법의 배경을 아는 사람의 감소나 가이드라인 작성 멤버의 세대교체도 진행되어 제1판 당시부터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 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된 정부 성령이나 검토위원회의 보고서, Q&A, 또는 가이드라인 각 항목의 개념 등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해 향후 개정예 참가할 멤버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가전제품의 생산 환경은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상품이나 판매 형태의 다양화에 의해 포장에 요구되는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분별 배출이 쉬운 포장 및 알기 쉬운 식별표시가 중요하다. 가이드라인으로써 식별표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ko]